

서울대학교 학생설계전공 시행세칙

제정 2022.01.04.

개정 2023.02.09.

제1조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<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> 제6장 제24조~28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때 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수학점)

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자유전공학부 주전공으로 이수하려 할 경우에는 39학점, 학생설계전공을 자유전공학부 심화전공으로 이수하려 할 경우에는 6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.

제3조(신청자격)

① 서울대학교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
1.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한다.
2.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.3(B+) 이상이어야 한다.
3. '전공설계2'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
1.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(이수예정자 포함)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2. 자유전공학부 전공필수 과목 중에서 '주제탐구세미나1'을 이수하여야 한다.
3. '전공설계2'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요건) 학생설계전공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.

1. 기존 전공과의 차별성
2. 이수 목적과 전공 영역 교과목의 타당성
3. 이수 계획의 타당성

제5조(교과과정 편성)

① 전공과목 교과과정은 '전공설계2, 학생자율연구, 종합설계'를 포함하여 전공교과목 51학점 이상 78학점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전공필수 교과목은 자유전공학부에서 개설하는 '전공설계2'와 '종합설계'를 포함하여 13학점, 5과목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③ 기 이수 교과목은 최초 교과과정 편성 시에 한해 최대 10학점까지 포함 가능하다. 교과과정 변경 시에 기 이수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.

④ 타대학 교과목은 교과과정 편성이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, 타대학 수학이 필요할 경우, 아래 제7조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⑤ 교과과정 편성 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및 담당 전문위원과 반드시 상의하고 결정하여야 하며, 교과과정 변경 신청 시 반드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⑥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시 자유전공학부 전공교과목 중 편성 가능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.

1. 종합설계

2. 자율연구1, 자율연구2 중 1과목

3. 창의융합세미나, **인문예술융합세미나, 자연과학융합세미나, 사회과학융합세미나**

자유전공학부 교과목은 제1호를 제외하고 6학점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며, 제1, 2호는 자유전공학부 전공교과목 졸업이수학점과 중복 인정 가능하다.

⑦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시에는 전공교과목을 81학점 이상 120학점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과과정 변경)

① 매년 신규 신청과 같은 기간에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여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 한다.

②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 변경은 총 1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, 통합,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**사유가**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**않으며,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**

③ 그 외 필요한 사항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타대학 수학 교과목 학점 인정)

① 타대학 수학 2개월 전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에 “타대학 수학 전공 학점 인정 신청서”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 받아야 하며, 이에 따라 기 이수 교과목은 타대학 수학 전공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.

② 타대학 수학 교과목 전공 인정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.

③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학생설계전공 타대학 수학 전공학점 인정 신청은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 중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, 유사 교과목명을 표시해서 신청하거나, 서울대학교 전체 교과과정에 유사한 교과목이 없어서 교과과정에 포함할 수 없을 경우, 해당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이유를 학생설계전공 취지에 부합되도록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학사지도 등)

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학사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에게는 학사지도비를 지급한다.

제9조(신청 및 취소)

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신청 기간에 「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」의 별지 제5호 학생설계전공 신청서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여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생설계전공 복수전공의 취소는 「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이수 규정」 별지 제2호 학생설계전공 취소원과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여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

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학생설계전공 주전공의 취소는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여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학생설계전공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후 기존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여부는 해당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.

⑤ 학생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학생설계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학생설계전공위원회)

①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임명직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기타사항)

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<2022. 01. 04.>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3. 02. 09.>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